

2023년 보건관리전문기관 평가 실시 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2023년 보건관리전문기관 평가」 실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평가대상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

※ 공고한 날로부터 지정일 1년 미만인 기관은 평가대상 제외

2. 평가자 : 안전보건공단 직원(필요시 외부전문가 포함)

3. 평가대상기간 : 2022.1.1. ~ 2022.12.31.까지 수행한 업무

4. 평가방법 : 기관별 방문평가(기관별 1~2일)

5. 평가기준 : 평가지표 운영체계(A)와 업무성과(B)로 구분

- 공단 홈페이지 평가 실시 공고문의 [붙임2] 2022년 보건관리전문기관 평가지표 참조
- 아래의 기준에 따라 평가등급을 결정

등급	기준
S등급	합계 점수가 900점 이상
A등급	합계 점수가 800점 이상 900점 미만
B등급	합계 점수가 700점 이상 800점 미만
C등급	합계 점수가 600점 이상 700점 미만
D등급	합계 점수가 600점 미만

- 평가운영위원회는 평가대상 기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를 통해 평가 등급을 최하위 등급으로 변경할 수 있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를 거부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거부」 기관으로 보고 및 결과 공표

6. 평가일정

- 평가실시 : 2023. 5. 30.(화) ~ 7. 7.(금)
 - ※ 기관평가 방문일은 해당 기관과 유선 협의 후 확정하며, 평가실시 기간은 「코로나19」 경보 수준 또는 외부전문가 일정에 따라 연장 가능
- 평가결과(절대점수) 통보 : 2023. 7월(예정)
-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2023. 7월~8월(예정)
 - ※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한 경우에 한하여 재평가 검토·심의
 - ※ 평가근거, 절차방법 및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평가 실시 공고문의 [붙임3] 참조
- 최종 평가결과 및 등급 공표 : 2023년 12월 ~ 2024년 1월

7. 자체평가 보고서

- 제출 기한 : **2023. 5. 19(금)**

▶ 양식은 공단 홈페이지 평가 실시 공고문의 (덧붙임1) 참조

- 자체평가 보고서를 작성한 기관은 **K2B에 제출**

▶ 제출 방법은 공단 홈페이지 평가 실시 공고문의 (덧붙임2) 참조

- 자체평가 보고서 등록 여부 및 자체평가의 적정성에 따라 가점(최대 +10) 부여(A.4.1.2)

- 기관이 자체평가 양식을 활용하여 운영체계 및 업무성과에 대해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기관의 장·단점을 스스로 파악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

※ 제출양식 등 관련자료 확인경로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알림소식 → 공지사항 → 2023년 보건관리전문기관 평가 실시 공고 게시글 내 첨부파일 참조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사업소개 → 공공/민간기관 평가 → 보건관리전문기관 → 자료실 → 평가 실시 알림 게시글 내 첨부파일 참조

8. 기타사항은 기관평가 담당자(052-703-0104/0109, **02-6924-8872**)에게 문의바랍니다.

2023년 5월 4일

한 국 산 업 안 전 보 건 공 단